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성범 · 차규근 · 이용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619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법 적용 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	3
2. 협의회 사무국 설치(안 제6조의2 신설)	9
3.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항 명시(안 제14조의2 등 신설)	12

I. 개요

1.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61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신성범의원 · 차규근의원 · 이용선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9. 4.
- (3) 회 부 일 : 2024. 9.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10만여 명이며 그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1,8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일반인 집단에 비해 각종 질병 이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

여 장례비를 지원하고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
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의2·제14조의2·제14조의3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법 적용 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에 자녀와 손자녀를 추가하여 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u>의료</u> 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의료 등-----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u><신설></u> 5. (생략)	제2조(정의)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친생자 4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친생자 5.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른 원자폭탄 피해자는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역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해당 지역에 있었거나, 투하 2주 이내에 인근 지역에 있었던 사람, 투하 이후 구호 등의 이유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그리고 당시 임신 상태였던 태아 등으로,

수술비, 약제비 등의 의료지원도 동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 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제12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이 조와 제13조의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의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술비
2. 진찰·검사비
3. 입원비
4. 약제비
5. 진료보조비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의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지난 2020년 「한국인 원폭 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욕구 조사 연구」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응답한 건강 수준은 전반적으로 일반 인구 집단 대비 좋지 못하고,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부모님의 피폭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으며, 의료비 지원, 건강 상담, 심리 상담, 무료 검진 서비스 등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¹⁾

□ 이에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하여 의료지원 등 동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원폭피해자 2, 3세의 현실적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 하겠음.

□ 개정안과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원자폭탄 피폭자 원호

1) <한국인 원폭 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욕구 조사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20, p.218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피해자 2세는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피폭에 따른 유전적 영향이 나타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음.²⁾

- 다만, 일본정부는 1979년부터 피해자 2세를 위한 건강진단사업을 지자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③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病變)

□ 다만, 보건복지부가 원폭피해의 인체 및 유전적 영향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원폭피해자 및 그 2세, 3세를 대상으로 코호트

2) 일본 RERF(Radiation Effects Research Foundation)의 코호트 연구(2017)

구축 및 유전체 분석 연구³⁾를 진행 중이라는 점과 피해자 2세를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여짐.

- 또한, 현행법에 따른 피해자 중 생존자가 1,763명이고,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6,800여명이므로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국인 원폭피해자 자녀·손자녀(2·3세) 현황 >

(단위: 명)

구분	합계	남성	여성
자녀	3,146	1,729	1,417
손자녀	3,694	1,966	1,728

* 2024. 8월 말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인원 기준

** 자료: 보건복지부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원폭 피해자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피해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단, 원폭 피해의 유전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 자손을 피해자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른 피해 사건 피해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기획재정부) 원폭피해자 범위 확대는 피폭의 유전적 영향에 대한

3) <한국인 원폭 피해자 코호트 구축 및 유전체 분석 연구>, (20'20~2024, 한양대학교)

인과관계가 명백히 규정되지 않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한적십자사)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의거 원폭 피해자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까지로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 예산 확보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경상남도 합천군) 원폭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는 피해자 후손들의 숙원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할 사안임.

2. 협의회 사무국 설치(안 제6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6조의2(사무국의 설치) ①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둔다.</u> <u>②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분석, 피해자 심사·결정, 의료지원금 지급 등의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피해자의 심사·결정
 3. 의료지원금의 지급
 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시 구성·운영할 수 있는 임의기구인데 상설기구를 전제로 하는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은 법규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음.

또한, 피해자 등록 및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⁴⁾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담당 업무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원폭피해자지원협의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상설 기

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등록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의 접수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지정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 실시

구로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이 낮으며, 원폭 피해자 지원 업무는 한·일 정부가 공동으로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여 수행기관 변경이 곤란

- (대한적십자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경우 일본 정부가 위탁한 건강수첩 소지자 지원사업과 우리 정부가 위탁한 건강수첩 미소지자 지원업무가 이원화되어 피해자 지원 사업에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3.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항 명시(안 제14조의2 등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 및 복지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u>의료</u> 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의료 등----- ----- ----- ----- -----
제12조(의료지원) ① (생략)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u>사람을 말한다</u>)는 이 조와 제13조의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의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료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사람을 말한다.</u> ----- ----- <u>이하 같다</u> ----- ----- -----
③ (생략) <u><신설></u>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장례비지원)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

<신 설>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는 제1항에 따른 장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복지지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피해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의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
2.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3. 피해자 단체의 운영지원
4. 그 밖에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복지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하여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모사업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술비
2. 진찰·검사비
3. 입원비
4. 약제비
5. 진료보조비

③ (생략)

제14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모묘역 및 위령탑
2.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수첩⁵⁾을 교부받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진료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진료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5) 건강수첩 교부 대상

- 1호 피폭자: 시내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피폭된 사람
- 2호 피폭자: 2주 이내 구호활동, 의료활동, 진척 찾기 등으로 히로시마 혹은 나가사키 시내(폭심지에서 2km 구역)에 들어간 사람
- 3호 피폭자: 피폭지 이외의 장소에서 신체에 원자폭탄의 방사능 영향을 받은 사람 (예. 의료종사자, 민간 봉사자 등 구호활동으로 피폭자와 직접 접촉한 경우)
- 4호 피폭자: 1-3호 피폭자의 태아(히로시마 피폭자의 태아로 1946.5.31. 이전 출생자와 나가사키 피폭자의 태아로 1946.6.3. 이전 출생자가 해당)

경상남도 합천군에 위치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운영비, 원폭피해자 협회 운영비 등도 국가와 경상남도 및 합천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 경기, 서울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조례에 따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⁶⁾

<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현황 >

(2023. 12. 26. 기준)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대한적십자사 등록자 : 1,763명 ① 건강수첩 소지자 : 1,726명 ② 건강수첩 미소지자 : 37명
진료비	②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진료비(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장례비	②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장례비 210만원('23년 기준) 지원
건강검진비	② 건강수첩 미소지자 연 1회 35만원 지원
진료보조비	대한적십자사 등록자 전원에 매월 10만원 지원 (단, 회관 입주자는 5만원)
복지회관 운영지원	운영비 전액 (국비 연 20억원)
연간소요액('22 기준)	49억원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이러한 각종 지원 사업 중 현행법에 명시된 의료지원 외의 장례비 지원과 복지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시 의무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6) 부산광역시도 부산시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에게 요양생활수당(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는 원폭 피해자 가구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의료·문화 및 휴양 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다만, 개정안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현행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원폭피해자 관련 의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피해자 단체의 운영지원 등의 사업 실시를 의무화한 규정은 각 지자체별 상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정부가 장례비를 지급⁷⁾하고 있으며, 피해자 복지증진사업 시행의 근거 마련 취지에 공감하나, 기시행 중인 사업 이외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사업 시행 여부와 종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9

7) 건강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장례비를 지급받음.

【참고】	일본의 원폭 피해자 정의 및 2세 지원현황
-------------	--------------------------------

□ 일본의 원폭 피해자 정의

- 근거 : 「원자폭탄 피해자 원호에 관한 법률」(원호법)
- 지원대상 : 히로시마 시장, 나가사키 시장, 도도부현(지자체) 지사가 인정하는 피폭자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

<건강수첩 교부 대상>

구분	정의
1호 피폭자	시내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피폭된 사람
2호 피폭자	2주 이내 구호활동, 의료활동, 친척 찾기 등으로 히로시마 혹은 나가사키 시내(폭심지에서 2km 구역)에 들어간 사람
3호 피폭자	피폭지 이외의 장소에서 신체에 원자폭탄의 방사능 영향을 받은 사람 (예. 의료종사자, 민간봉사자 등 구호활동으로 피폭자와 직접 접촉한 경우)
4호 피폭자	1-3호 피폭자의 태아(히로시마 피폭자의 태아로 1946.5.31. 이전 출생자와 나가사키 피폭자의 태아로 1946.6.3. 이전 출생자가 해당)

□ 일본의 원폭 피해자와 피폭자 2세 지원현황

구분	(한국/일본 거주) 원폭 피해자 (1세)	(일본 거주) 원폭 피해자의 2세
제도의 근거	「원자폭탄피해자 원호에 관한 법률」 (조례 등에 의해 추가조치를 마련한 지자체도 있음)	「피폭2세 건강진단 조사사업 실시요강」 (법률은 없으나 행정사업으로 추진)
실시주체	제도의 창구와 실시는 도도부현 (또는 히로시마시, 나가사키시) 의료특별수당 인정심사는 정부 소관	사업 실시 주체는 도도부현
자격명칭	피폭자건강수첩	도도부현마다 상이 (지자체에 따라 2세 수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함)
대상	<u>피폭자건강수첩을 신청하여 획득한 자</u> (피폭사실이 있어도 피폭자건강수첩을 획득하지 못하면 제도 이용 불가)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의 자녀로 도도부현에 신청하여 자격을 얻은 자 (부모가 피폭된 사실이 있어도 <u>피폭자건강수첩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u> 자녀도 제도 수혜 불가)
주요내용	무료 건강검진(암 검진 포함) 피폭자 제수당 수급 (추가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있음)	무료 건강검진 (추가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있음. 도쿄에서는 암 검진 추가)
비고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에 한정된 제도로, <u>가족·유족에 대한 지원은 없음</u>	피폭2세건강진단조사사업실시요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며 <u>피폭자와 같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u>